

제158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면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4면
3.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50면
4.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79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1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에 따른 이자율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조례 시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
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및 제9조제3항).
- 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 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하
여 신설함 (안 제10조의 별표 2).
- 다.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준용규정을 신
설함 (안 제11조).

III. 검토의견

1.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2005. 9.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이 동년 11월 17일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조례 개정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각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 먼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을 보면, 법 제51조의2에서 “내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점용료 · 변상금을 분할 납부 및 반환할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고 규정된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다”라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같은 법령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3.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적정 여부 (안 제10조)

○ 안 제10조의 규정에서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신설 규정을 둔 것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서는 ①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

과하여 점용한 자와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 ③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④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반공사를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이관하여 신설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처분기준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IV. 관련법규

● 道路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第86條의2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圓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신설 1995.12.6, 2004.1.20>

1.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面積을 초과하여 占用한 者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第4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竣工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圖面을 제출한 者
3. 삭제 <1999.2.8>
4. 第4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者의 立會없이 掘鑿工事を 施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圓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0>

1. 削除 <1995.12.6>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4.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原狀回復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5.12.6>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に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管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理廳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5.12.6>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5.12.6>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0호]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20條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1)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1994.3.16]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1)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2)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당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3)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國有財産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25호]

第51條의2 (過誤納金 返還加算金) 國家가 過誤納된 國有財産의 使用料·貸付料·賣却代金 또는 辨償金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過誤納付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반환한다.

[本條新設 1994.1.5]

○ 國有財産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86호]

제56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51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4.4.6>